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관
람

기관
의
장

제1750호 2023. 5. 8.(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78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79호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 1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6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9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02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2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3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4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23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경서근린공원】결정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 ————— 5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2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6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3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72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78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민재산권의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 나.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 마. 용어 수정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842, 팩스 032-560-2786)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재산권의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 나.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 마. 용어 수정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협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519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을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구성) 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각 개별공시지가 관련 심의 시에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개별주택가격 관련 심의 시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위촉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2. 감정평가사
3. 세무사
4. 관내에서 3년이상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5.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

③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을 “부위원장 또는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위원”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 또는 위촉 위원 중 관할 세무서의 평가담당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회의록비치)”를 “(회의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5년간 보관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위원 참석사항
3. 위원발언 요지
4. 심의사항 및 결과

5. 그 밖에 중요사항

제9조 중 “위원회 개최 시에는 참석위원”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참석 위원”으로, “여비”를 “수당과 여비”로 한다.

제10조 중 “거처 별도로”를 “거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p>제1조(목적) ----- ----- ----- -- <u>구성 및 운영</u>----- -----.</p> <p>제3조의2(구성) ① <u>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각 개별공시지가 관련 심의 시에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개별주택가격 관련 심의 시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u></p> <p>② <u>위촉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u> 2. <u>감정평가사</u> 3. <u>세무사</u> 4. <u>관내에서 3년이상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중개사</u> 5. <u>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응할</u>

제3조(회의 및 의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
 ③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위원장 또는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위원-----.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 또는 위촉위원 중 관할 세무서의 평가담당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제8조(회의록비치)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1. 개최일시 및 장소
- 2. 위원 출석사항
- 3. 심의사항
- 4. 진행사항
- 5. 위원발언 요지
- 6. 심의결과
- 7.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 개최 시에는 참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5년간 보관한다.

- 1. 개최일시 및 장소
- 2. 위원 참석사항
- 3. 위원발언 요지
- 4. 심의사항 및 결과
- 5. 그 밖에 중요사항

제9조(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참석 위원-----

----- 수당과 여비-----
--.

제10조(운영세칙) -----

----- 거쳐
-----.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공시법)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6. 9.>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12. 18.>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79호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인에 대해 2023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3. 5.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 상 자	수출기업인 납세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그 외 일반납세자
연 장 기 간	2개월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3. 8. 31.	2023. 8. 31.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분	세부내용	제외대상
수출 기업인	·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 과표 5억 원 이상인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 상 자	·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2과(☎ 032-560-49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3-8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독정로 111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5.8.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3-5-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0	인천광역시 서구 독정로 111 (당하동)	20220502	인근 자인부락인 "독정마을"의 이름을 반영	검단신도시 AA34블럭
2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3-1	인천광역시 서구 꽃뚝길 167 (시천동)	20090922	꽃뚝라는 자인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	
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64-8	인천광역시 서구 가원로133번길 6 (마전동)	20210531	가원로 시작점의 1,330M 지점에서 분기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514-2, 50	인천광역시 서구 증봉대로 1593 (금곡동)	20090706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현산생의 호를 따서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3-5-8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405-1 (당하동)	건물 말소	20150806	경인 아라뱃길(수로) 건설로 일부구간을 철거 및 폐쇄하고 신규 우회하는 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구간 변경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34번길 31 (당하동)	건물 말소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유상정밀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34번길 25 (당하동)	건물 말소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715 (물로동)	건물 말소	20090710	검대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9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입법취지(개정이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정비하고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정비(안 제7조제3항제1호)

나. 위탁의 취소 규정 삭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가정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
12층 가정보육과(보육행정팀)
- ☎(032)560-5721, email: whahaha38317@korea.kr

* 의견 제출 후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정(개정·폐지)이유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정비하고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정비(안 제7조제3항제1호)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 상한 나이 65세를 감안하여 위탁기간 정비 ○ 위탁의 취소 규정 삭제(안 제10조) -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 삭제
제정(개정·폐지)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대비표	“별 지 참 조”
관 계 법 령 발 취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관 련 사 업 계 획	
예 산 수 반 사 항	
기 타 참 고 사 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정비하고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정비

-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인건비를 65세까지 지원하고 있어 원장의 인건비 지원이 안 될 경우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이 불가능한 바,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 상한 나이 65세를 감안하여 최초 위탁 시부터 10년 이내에 원장의 나이가 65세에 달하게 되는 경우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7조제3항제1호)

나. 위탁의 취소 규정 삭제

- 현 규정은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하는 규정을 정해놓고 있음.
-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 삭제(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과 합의

라. 기 타: 규제심의대상 사무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3년 이상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 상한 나이 65세를 감안하여, 최초 위탁 시부터 10년 이내에 원장의 나이가 65세에 달하게 되는 경우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탁기간) ①·② (생략)</p> <p>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5년</u>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1. <u>수탁자가 개인(원장)인 경우 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u></p> <p>2. 3. (생략)</p> <p><u>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규칙 제25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u></p>	<p>제7조(위탁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3년 이상 5년</u> ----- -----.</p> <p>1. <u>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인 건비 지원 상한 나이 65세를 감안 하여, 최초 위탁 시부터 10년 이내에 원장의 나이가 65세에 달하게 되는 경우</u></p> <p>2. 3.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관계 법령 발췌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월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 아. <생략>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30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흡에 해당한 경우
4.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6.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7.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8.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9.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0.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1002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23. 5. 8. ~ 2023. 5. 22.(15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68무0339 등 10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5, FAX 032-560-2793)		

3. 유 의 사 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5)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68무0339	BMW 420d Coupe	손*주	2023.04.25
2	17마6240	E300	**캐피탈(주)	2023.04.25
3	106러6951	마세라티 기블리 S Q4	**캐피탈(주)	2023.04.25
4	인천5그1703	이스타나-쏫12코치	김*정	2023.04.24
5	28서5555	BMW 520d	KIM ***** **IMOVICH	2023.04.21
6	386나1267	BMW X4 xDrive20i xLine	**캐피탈 주식회사	2023.04.20
7	29라4262	마티즈 1.0 DOHC	남*경	2023.04.11
8	46노1173	아반떼(AVANTE)	김*	2023.04.05
9	308보1989	마세라티 기블리	김*선	2023.04.05
10	186러5334	Mercedes-AMG GT43 4MATIC +	**캐피탈(주)	2023.04.03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10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5.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 서구의 반부패 청렴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가능한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제3조)
- 공직자의 청렴의무(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제6조)
- 사업시행, 예산지원, 협력체계 등(제7조~제9조)
- 청렴도 조사(제10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제11조)
- 청렴교육 및 홍보 등(제12조)
- 포상(제1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5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할곳 : 감사담당관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심곡동) 제2청사
13층 감사담당관
- 전 화 : ☎ (032)560-6863, FAX (032)560-2705
-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5. 참고자료

- 가.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 나. 의견제출서(서식)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서구의 반부패 청렴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가능한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제3조)
- 공직자의 청렴의무(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제6조)
- 사업시행, 예산지원, 협력체계 등(제7조~제9조)
- 청렴도 조사(제10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제11조)
- 청렴교육 및 홍보 등(제12조)
- 포상(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부서협의: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서구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고 한다), 출자·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나.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 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출자·출연기관"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구가 설치한 공사·공단 및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구에서 출자·출연한 단체·기관을 말한다.
3.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서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
-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 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교육 및 홍보 사업
-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 3. 공직자 청렴도 진단·평가
-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
-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구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내부 조직운영 부패수준인 내부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내부체감도 분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⑤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소통 간담회, 청렴캠페인, 청렴민·관협의회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청렴시책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서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서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2. 3.]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시행일: 2023. 9. 15.] 제15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시행일: 2023. 9. 15.] 제17조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관·실·과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10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5.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폐지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에 따라 주민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1.13. 시행)로 규정하고, 이 법률에 위임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2021. 12. 20.)」가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전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던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 이 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062, 팩스 032-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폐제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에 따라 주민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1.13. 시행)로 규정하고, 이 법률에 위임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2021. 12. 20.)」가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전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던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폐제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가정보육과, 감사담당관 합의
- 라. 기 타: 별첨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약칭: 주민조례발안법)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관계조례 발취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 하여야 할 주민 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연서 주민 수에서 1 미만의 단수는 이를 1로 본다.(개정 2008. 1.15)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p>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의견 제출인 주소</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전화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성명 (서명 또는 인)</p> <p>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p>	
비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p>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p>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1023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경서근린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경서근린공원) 결정 입안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원개요

- 공 원 명 : 경서근린공원
- 공원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96번지
- 면 적 : 21,935.2m²

2.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 입안사유

- 공원내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함으로써 아동들이 자유롭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하자 하며 충분한 공간 확보 및 효율적인 배치를 통하여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 총괄조서(붙임1~3)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장소 및 구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032-560-4796)

붙임1) 총괄조서(경서근린공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계	21,935.2	8,790	1	315	315	75	21,935.2	8,638	1	315	315	125	감)152㎡, 증)50기		
공 원 사 설	시 설 계	8,790	8,790	1	315	315	75	8,638	8,638	1	315	315	125	감)152㎡, 증)50기	
	기 반 시 설	소 계	5,586	5,586	-	-	-	-	5,248	5,248	-	-	-	-	감)338㎡
		도 로	2,563	2,563	-	-	-	-	2,563	2,563	-	-	-	-	-
		광 장	3,023	3,023	-	-	-	-	2,685	2,685	-	-	-	-	감)338㎡
	조경 시설	294	294	-	-	-	21	294	294	-	-	-	37	증)16기	
	휴양 시설	78	78	-	-	-	31	78	78	-	-	-	31	-	
	편익 시설	673	673	-	-	-	7	673	673	-	-	-	7	-	
	유희 시설	420	420	-	-	-	2	478	478	-	-	-	2	증)58㎡	
	운동 시설	1,332	1,332	-	-	-	14	1,332	1,332	-	-	-	18	증)4기	
	교양 시설	407	407	-	-	-	-	535	535	-	-	-	30	증)128㎡, 30기	
관리 시설	-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13,145.2	-	-	-	-	-	13,297.2	-	-	-	-	-	녹지율: 60.62%		
시설율(%) (법정 40%이하)	$(8,790\text{㎡} \div 21,935.2\text{㎡}) \times 100 = 40.07\%$						$(8,638\text{㎡} \div 21,935.2\text{㎡}) \times 100 = 39.38\%$								
건폐율(%) (법정 10%이하)	$(315\text{㎡} \div 21,935.2\text{㎡}) \times 100 = 1.44\%$						$(315\text{㎡} \div 21,935.2\text{㎡}) \times 100 = 1.44\%$								

조성계획총괄도(기정)

경서근린공원

■ 토지이용 계획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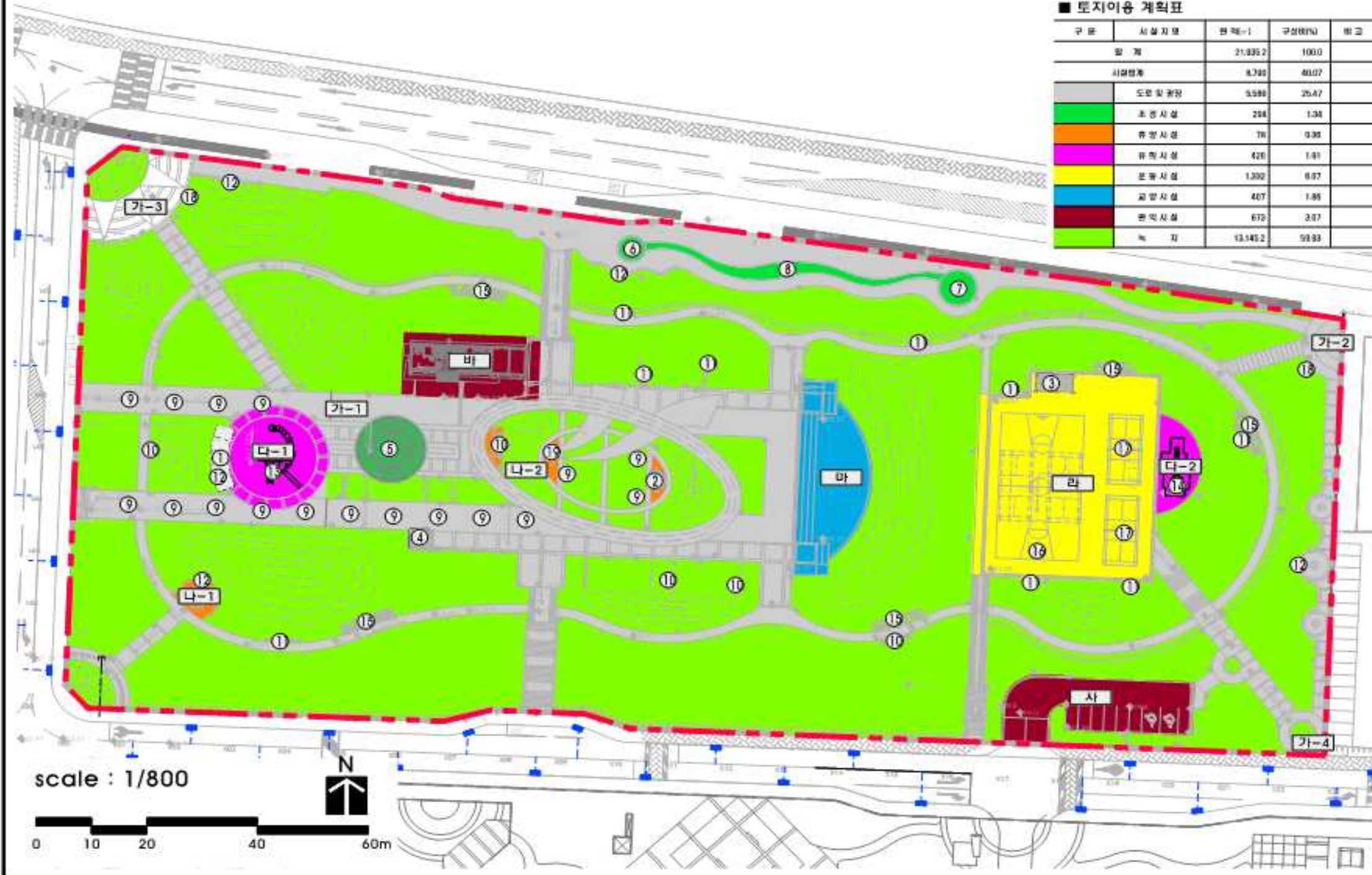
구분	면적(㎡)-1	면적(㎡)-2	비율(%)	비고
공원면적	21,895.2	-	-	-
시설면적	8,774	8,788	40.67%	법규가능 면적(공원면적49%이상)
건축면	2,106	315	1.44%	법규가능 면적(공원면적19%이상)

■ 토지이용 계획표

구분	시설지명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1,895.2	100.0	
시설면적		8,788	40.07	
	도면외경장	5,588	25.67	
	초경시설	284	1.34	
	휴양시설	76	0.35	
	유치시설	420	1.91	
	보통시설	1,302	6.07	
	교양시설	407	1.86	
	체육시설	610	2.87	
	녹지	13,145.2	59.93	

■ 시설 범례

구분	지명	시설명	면적(㎡)				비고
			부지면적	면적(㎡)	면적(㎡)	면적(㎡)	
합계			21,895.2	315	315	29	
공원			8,788	-	-	-	40.07%
도면외경장	소계		5,588	-	-	-	
	도면		2,992	-	-	-	
	기		3,323	-	-	-	
	가-1	경장1	12,786	-	-	-	
	가-2	경장2	990	-	-	-	
유치시설	소계		420	-	-	-	
	가-3	경장3	1,170	-	-	-	
	가-4	경장4	650	-	-	-	
	소계		284	-	-	21	
휴양시설	소계		76	-	-	1	
	가-1	경장1	-	-	-	1	
	가-2	경장2	-	-	-	1	
	가-3	경장3	-	-	-	1	
	가-4	경장4	-	-	-	1	
	가-5	경장5	-	-	-	1	
	가-6	경장6	-	-	-	1	
	가-7	경장7	-	-	-	1	
	가-8	경장8	-	-	-	1	
	가-9	경장9	-	-	-	1	
보통시설	소계		1,302	-	-	14	
	가-1	경장1	1,302	-	-	-	
	가-2	경장2	-	-	-	2	
	가-3	경장3	-	-	-	1	
교양시설	소계		407	-	-	11	
	가-1	경장1	407	-	-	-	
	가-2	경장2	-	-	-	1	
	가-3	경장3	-	-	-	1	
체육시설	소계		610	-	-	7	
	가-1	경장1	315	315	315	-	
	가-2	경장2	358	-	-	-	
	가-3	경장3	-	-	-	2	
녹지	소계		13,145.2	-	-	59.93%	



scale : 1/800



토지이용계획도(기정)

경서근린공원

■ 토지이용 계획표

구분	시설내용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1,026.2	100.0	
시설면적		6,790	32.3	
	도로 및 포장	5,506	26.2	
	조경시설	294	1.4	
	휴먼시설	79	0.4	
	문화시설	420	2.0	
	문화시설	1,332	6.3	
	교양시설	407	1.9	
	편의시설	673	3.2	
	녹지	13,145.2	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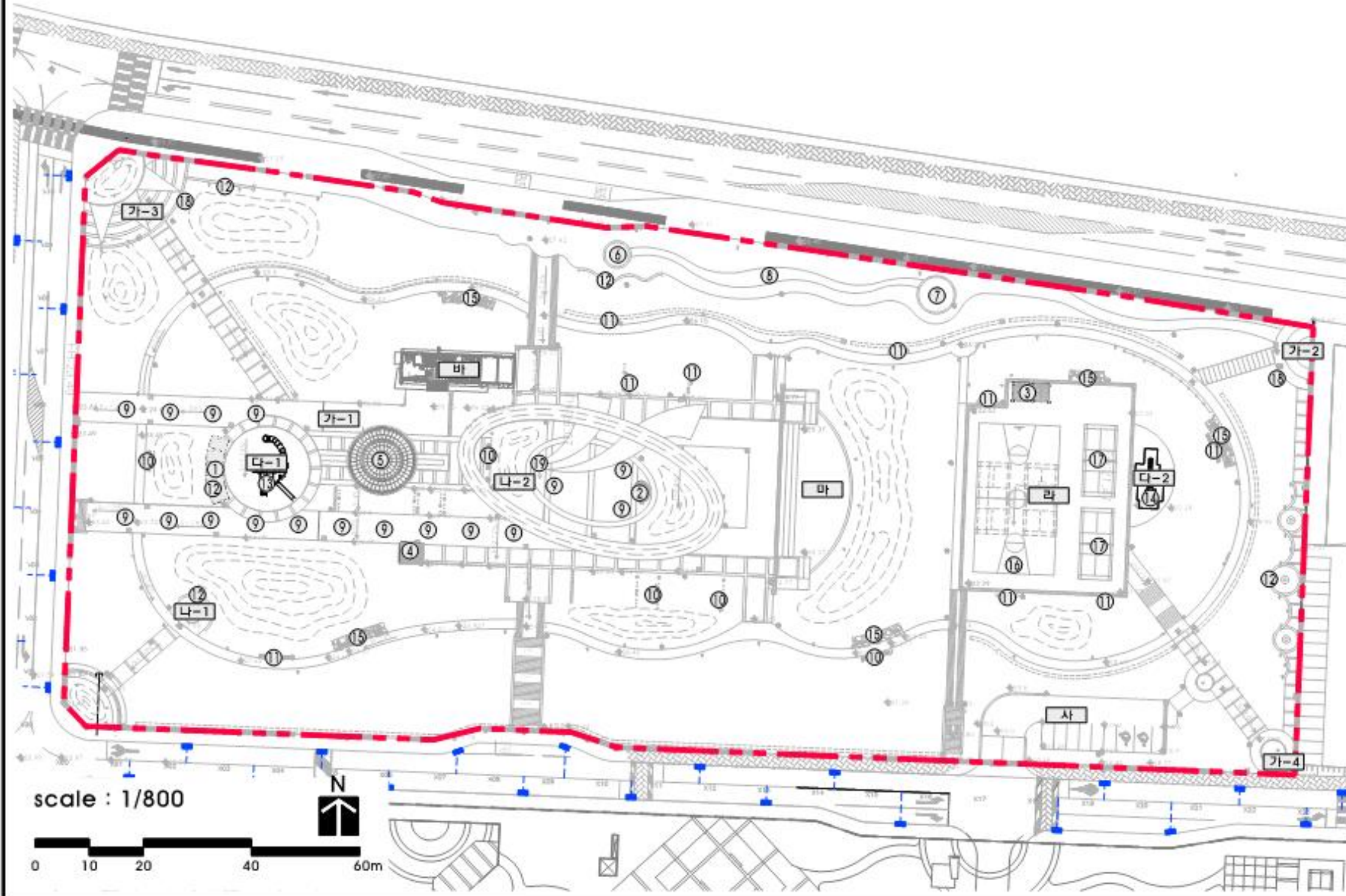


시설물배치계획도(기정)

경서근린공원

■ 시설 범례

구분	지호	시설명	면적-1				비고
			부지면적	면적	면적	면적	
합계			21,395.2	315	315	75	
공공시설합계			8,790	-	-	-	40.6%
도로 및 광장	소계		5,588	-	-	-	
	도로	도로	2,963	-	-	-	
	기	광장	3,625	-	-	-	
	가-1	광장 1	12,786	-	-	-	
	가-2	광장 2	900	-	-	-	
주변시설	소계		294	-	-	21	
	외향도로교차		-	-	-	1	
	외향도로교차		-	-	-	1	
	외향도로교차		-	-	-	1	
유원시설	소계		78	-	-	31	
	나	유기소	78	-	-	-	
	나-1	유기소 1	602	-	-	-	
	나-2	유기소 2	280	-	-	-	
	유원지		-	-	-	12	
	행위지		-	-	-	19	
	담음역		-	-	-	-	
	유원시설	소계	420	-	-	2	
다	어린이놀이터	420	-	-	-		
다-1	어린이놀이터	1,140	-	-	-		
다-2	어린이놀이터	1,000	-	-	-		
조형놀이대		-	-	-	1		
조형놀이대		-	-	-	1		
운동시설	소계		1,332	-	-	18	
	다	다목적운동장	1,332	-	-	-	
	테니스장		-	-	-	2	
	노구장		-	-	-	1	
공정시설	소계		463	-	-	-	
	의	대안부대	463	-	-	-	
편의시설	소계		675	-	-	7	
	바	편의시설부수	315	315	315	-	
	사	주차장	360	-	-	-	
	충전안내판		-	-	-	2	
	물성		-	-	-	5	
총지	소계		13,145.2				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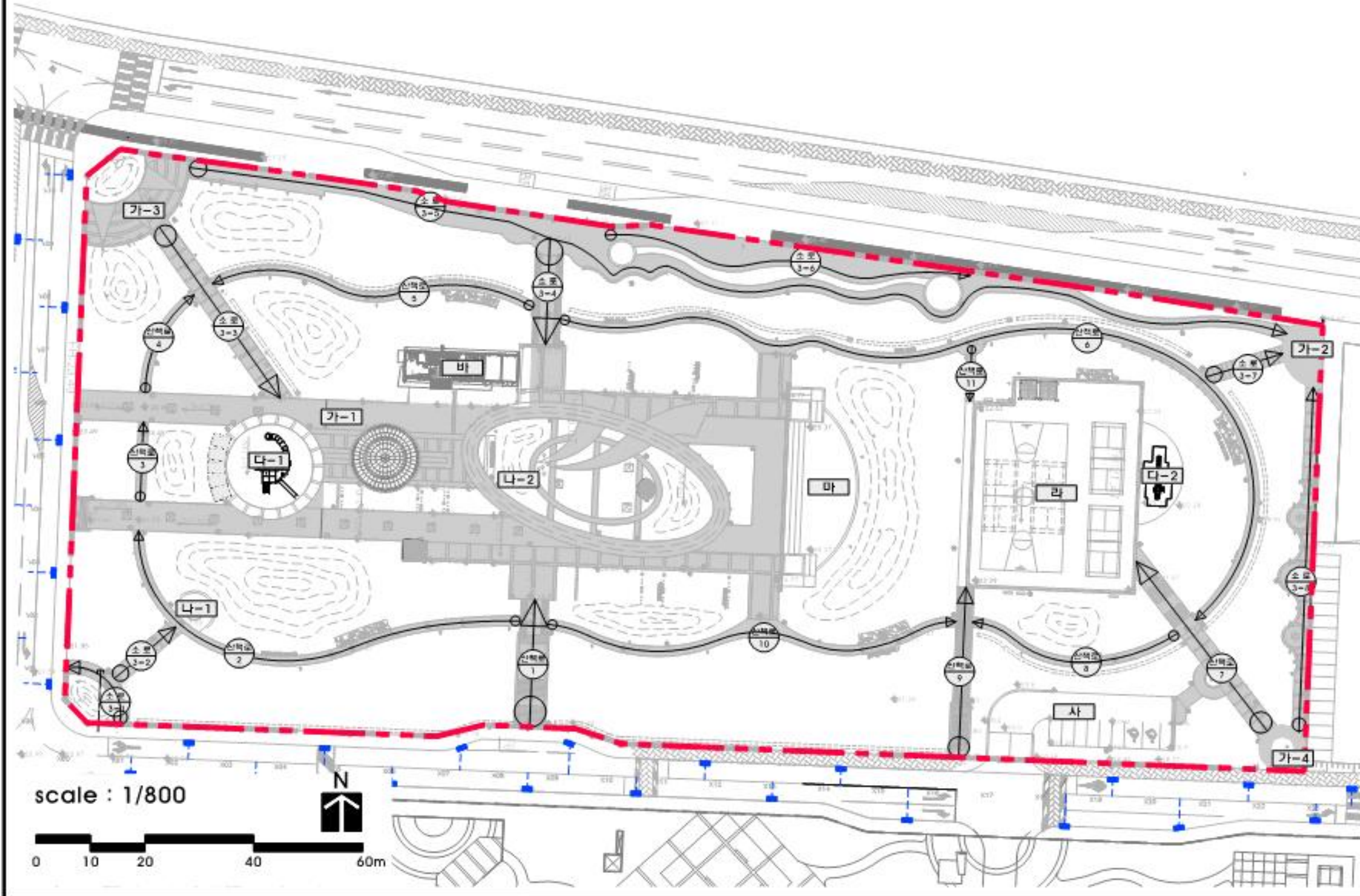


동선계획도(기정)

경서근린공원

도로길정보서

구분	종류	구간	길이(m)	면적(m ²)	비고	기타	사	공	용	원	비고	
총계	-	-	1,132	2,503	-	-	-	-	-	-	-	
소로	-	-	537	1,292	-	-	-	-	-	-	-	
기차	소로	3-1	2.5	17	43	진입로	남쪽경계	서쪽경계	사	공	용	
	소로	3-2	3.0	15	45	진입로	소로1	산책로2	사	공	용	
	소로	3-3	4.0	41	104	진입로	광장가-3	광장가-1	사	공	용	
	소로	3-4	6.0	28	100	진입로	소로5	광장가-1	사	공	용	
	소로	3-5	2.0	278	565	진입로	광장가-3	광장가-2	사	공	용	
	소로	3-6	2.0	75	150	진입로	북쪽경계	계류	사	공	용	
	소로	3-7	3.0	15	45	진입로	산책로6	광장가-2	사	공	용	
	소로	3-8	2.5	76	190	진입로	광장가-4	광장가-2	사	공	용	
소로	-	-	525	1,271	-	-	-	-	-	-	-	
산책로	산책로	-1	5.0	24	120	진입로	남쪽경계	광장가-1	사	공	용	
	산책로	-2	1.8	85	153	산책로	산책로1	광장가-1	사	공	용	
	산책로	-3	1.8	75	27	산책로	광장가-1	광장가-1	사	공	용	
	산책로	-4	1.8	21	30	진입로	광장가-1	소로3	사	공	용	
	산책로	-5	1.8	61	110	산책로	소로4	소로3	사	공	용	
	기차	산책로	-6	1.8	178	320	산책로	소로4	산책로7	사	공	용
		산책로	-7	4.0	48	100	진입로	광장가-4	남쪽경계	사	공	용
		산책로	-8	1.8	40	72	산책로	산책로7	산책로9	사	공	용
		산책로	-9	3.0	21	96	진입로	남쪽경계	남쪽경계	사	공	용
		산책로	-10	1.8	88	155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9	사	공	용
		산책로	-11	1.5	13	20	산책로	산책로6	남쪽경계	사	공	용



조성계획총괄도(변경)

경서근린공원

■ 토지이용 계획표

구분	면적(㎡)-1	적용면적(㎡)-1	비율(%)	비고
공원면적	21,835.2	-	-	
시설면적	8,774	8,838	39.28%	배구장도 포함(면적10%이내)
건축면적	2,194	315	1.44%	배구장도 포함(면적10%이내)

■ 토지이용 계획표

구분	시설자명	면적(㎡)-1	구성비(%)	비고
합계		21,835.2	100.0	
시설면적		8,838	39.28	
도도 및 공원		5,248	23.93	
주요 시설		284	1.34	
휴양 시설		78	0.35	
유형 시설		478	2.19	
분류 시설		1,332	6.07	
교양 시설		505	2.44	
문화 시설		672	3.07	
녹지		13,287.2	60.72	

■ 시설 명세

구분	자명	시설명	면적(㎡)			비고
			부지면적	면적	비율(%)	
합계			21,835.2	315	1.25	
공원 시설 합계			8,538	-	-	39.28%
도도 및 공원	소계		5,248	-	-	
	도도		2,992	-	-	
	기		2,895	-	-	
	가-1	운동장1	12,400	-	-	
	가-2	운동장2	800	-	-	
주요 시설	소계		284	-	-	37
	원형운동장A		-	-	-	1
	원형운동장B		-	-	-	1
	사자운동장		-	-	-	1
	정자운동장		-	-	-	1
유형 시설	소계		478	-	-	
	태권도관		330	-	-	
	조정관		21	-	-	
	안경관		41	-	-	
	체육관		86	-	-	
	수목보육장		-	-	-	12
	태고관		-	-	-	21
	산책로		-	-	-	
	소계		78	-	-	31
	분류 시설	소계		1,332	-	-
나			78	-	-	
나-1		휴게소1	625	-	-	
나-2		휴게소2	800	-	-	
명상지			-	-	-	12
교양 시설	소계		478	-	-	2
	다		478	-	-	
	다-1	어린이놀이터	1,920	-	-	
	다-2	어린이놀이터	1,100	-	-	
	조형물		-	-	-	1
문화 시설	소계		1,332	-	-	18
	라		1,332	-	-	
	배드민턴장		-	-	-	2
	보구장		-	-	-	1
	양궁장		-	-	-	15
교양 시설	소계		505	-	-	30
	리		487	-	-	
	리	유아승차점	128	-	-	
	리-1	유아승차점	800	-	-	
	리-2	유아승차점	120	-	-	
	리-3	유아승차점	800	-	-	
	유아놀이터		-	-	-	1
	물놀이장		-	-	-	1
	연습장		-	-	-	3
	경사도판		-	-	-	2
	공명실기		-	-	-	1
	물놀이장		-	-	-	4
	스케이트장		-	-	-	1
물놀이장		-	-	-	15	
어린이놀이터		-	-	-	1	
공명실기		-	-	-	1	
문화 시설	소계		672	-	-	7
	리		315	315	-	
	리	주차장	888	-	-	
녹지	소계		-	-	-	2
	리		-	-	-	5
	리		-	-	-	
합계			13,287.2			60.72%



토지이용계획도(변경)

경서근린공원

■ 토지이용 계획표

구분	시설지종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1,935.2	100.0	
시설면적		8,838	39.98	
	도로 및 광장	5,288	23.93	
	포장시설	284	1.28	
	휴게시설	78	0.35	
	유체시설	478	2.18	
	분할시설	1,322	5.97	
	교양시설	506	2.44	
	편익시설	678	3.07	
	녹지	13,297.2	5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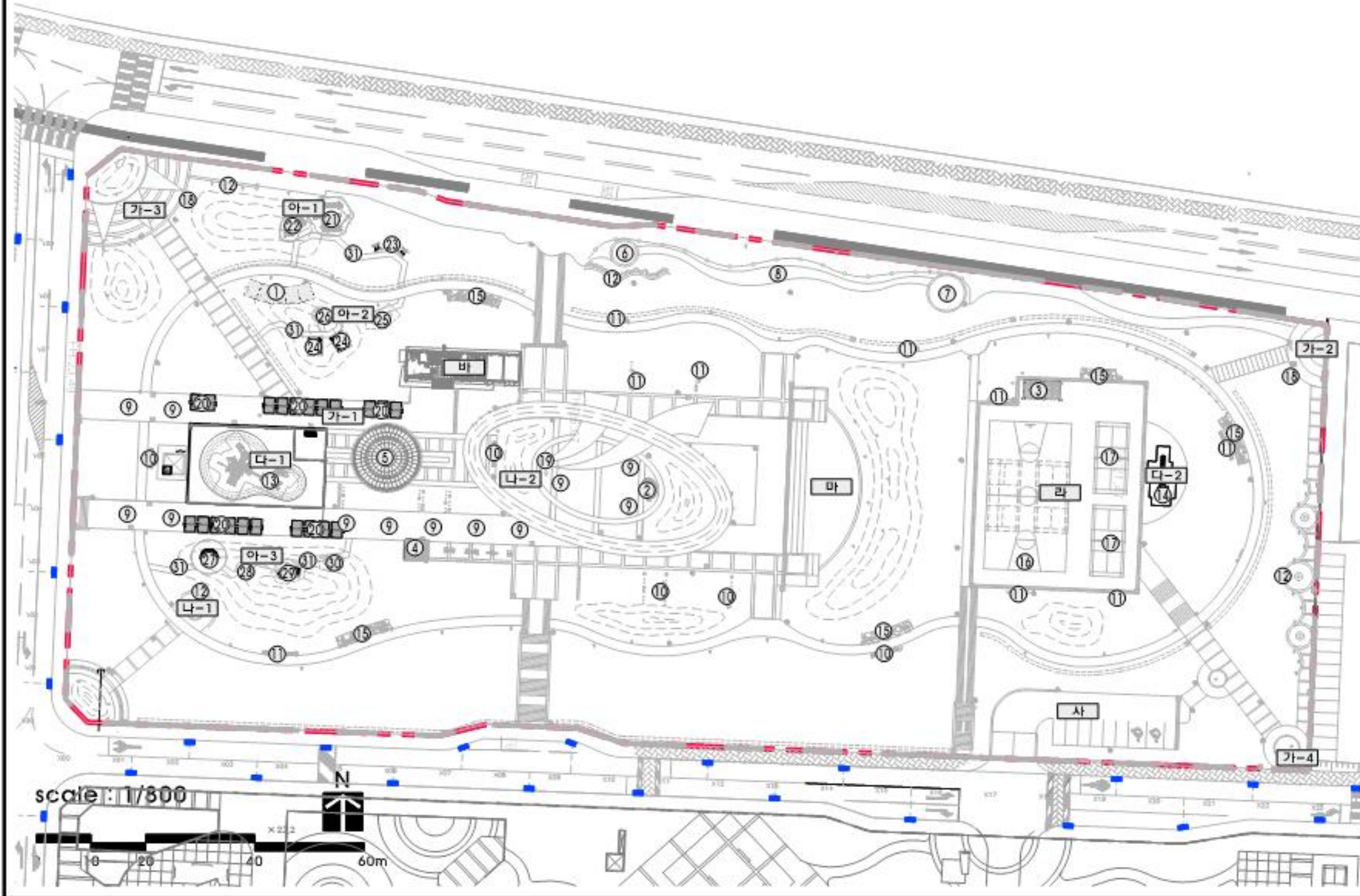


시설물배치계획도(변경)

경서근린공원

■ 시설 범위

구분	지호	시설명	면적(㎡)			계획률 (%)
			부지면적	위탁면적	면적	
합계			21,295.2	315	315	1.5%
공공시설합계			8,638	-	-	40.58%
도로및 주차장	소계		5,248	-	-	-
	도로	도로	2,963	-	-	-
	기타	주차장	2,285	-	-	-
	가-1	주차장 1	12,400	-	-	-
	가-2	주차장 2	900	-	-	-
주변시설	소계		1,170	-	-	-
	가-3	주차장 3	1,170	-	-	-
	가-4	주차장 4	1,050	-	-	-
	소계		294	-	-	37
	가-1	생태교육교과실	-	-	-	1
가-2	외향교육교과실	-	-	-	1	
가-3	사각교육교과실	-	-	-	1	
가-4	정자교육교과실	-	-	-	1	
가-5	태석분수	133	-	-	-	
가-6	조형분수	21	-	-	-	
가-7	안개분수	41	-	-	-	
가-8	계류	88	-	-	-	
가-9	수해보호설계	-	-	-	12	
가-10	태고교	-	-	-	21	
가-11	담양대천	-	-	-	-	
유원시설	소계		78	-	-	31
	나-1	휴게소	78	-	-	-
	나-2	휴게소 1	620	-	-	-
	나-3	휴게소 2	600	-	-	-
	나-4	명상자	-	-	-	12
유원시설	소계		-	-	-	18
	다-1	명상자	-	-	-	18
	다-2	명상자	-	-	-	18
	다-3	명상자	-	-	-	18
	다-4	명상자	-	-	-	18
유원시설	소계		478	-	-	2
	다-1	어린이놀이터	478	-	-	-
	다-2	어린이놀이터	1,070	-	-	-
	다-3	어린이놀이터	1,000	-	-	-
	다-4	조형놀이터	-	-	-	1
운동시설	소계		1,332	-	-	18
	라-1	다목적운동장	1,332	-	-	-
	라-2	태고인양자주	-	-	-	2
	라-3	농구터	-	-	-	1
	라-4	양궁대시점	-	-	-	15
유원시설	소계		535	-	-	39
	마-1	야외무대	487	-	-	-
	마-2	유아수체형원	128	-	-	-
	마-3	유아수체형원	900	-	-	-
	마-4	유아수체형원	1,120	-	-	-
	마-5	유아수체형원	800	-	-	-
	마-6	육각건넌기	-	-	-	1
	마-7	봉납무건넌기	-	-	-	1
	마-8	연교현형	-	-	-	3
	마-9	경시오븐기	-	-	-	2
	마-10	광명탑기	-	-	-	1
	마-11	봉납무의자	-	-	-	4
	마-12	스피이스팅	-	-	-	1
	마-13	봉납무의자	-	-	-	15
	마-14	어린이수체형원	-	-	-	1
마-15	공룡드래곤건넌기	-	-	-	1	
편의시설	소계		673	-	-	7
	바-1	편의사무소	315	315	315	-
	바-2	주차장	358	-	-	-
	바-3	휴양연대	-	-	-	2
바-4	동역	-	-	-	5	
합계	소계		13,297.2			6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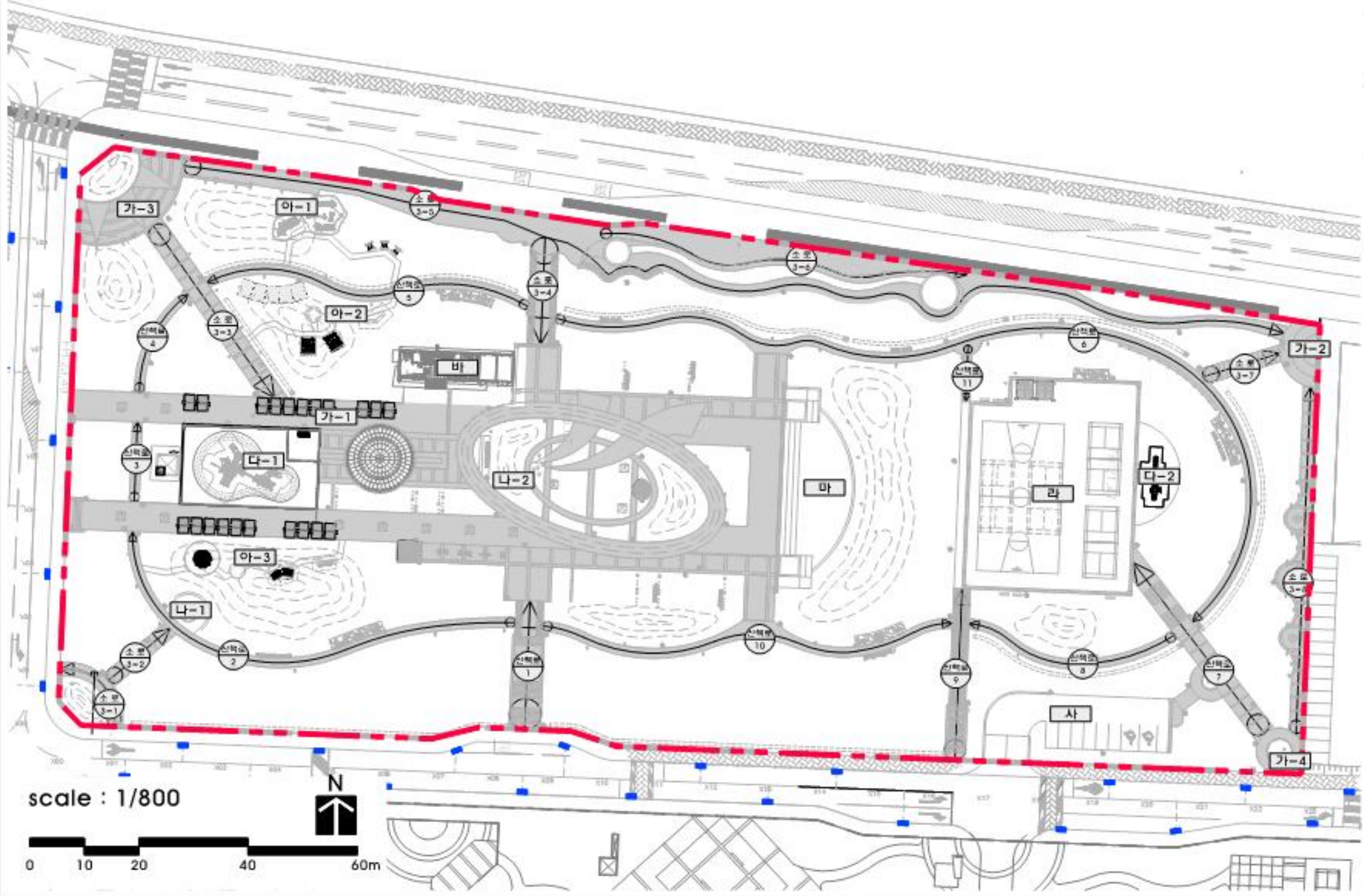


동선계획도(변경)

경서근린공원

■ 도로결정조서

구분	종교	유역면적	유역면적	연장	연장	기	사	공	용	결	고
총 계	-	-	-	1,132	2,563	-	-	-	-	-	-
소 계	-	-	-	537	1,292	-	-	-	-	-	-
가장	소	모	3	1	2.5	17	43	관음역	남쪽경계	서쪽경계	-
	소	모	3	2	3.0	15	45	연동역	소로1	산책로2	-
	소	모	3	3	4.0	41	104	연동역	광장 가-3	광장 가-1	-
	소	모	3	4	5.0	28	100	연동역	소로5	광장 가-1	-
	소	모	3	5	2.0	278	565	연동역	광장 가-3	광장 가-2	-
	소	모	3	6	2.0	75	150	연동역	북쪽경계	계류	-
	소	모	3	7	3.0	15	45	연동역	산책로6	광장 가-2	-
	소	모	3	8	2.5	76	190	연동역	광장 가-4	광장 가-2	-
소 계	-	-	-	537	1,271	-	-	-	-	-	-
산책로	-	1	5.0	24	120	관음역	남쪽경계	광장 가-1	-	-	-
산책로	-	2	1.8	85	153	산책로	산책로1	광장 가-1	-	-	-
산책로	-	3	1.8	75	27	산책로	광장 가-1	광장 가-1	-	-	-
산책로	-	4	1.8	21	38	연동역	광장 가-1	소로3	-	-	-
산책로	-	5	1.8	51	110	산책로	소로4	소로3	-	-	-
가장	산책로	-	6	1.8	176	320	산책로	소로4	산책로7	-	-
산책로	-	7	4.0	48	100	연동역	광장 가-4	다목적운동장	-	-	-
산책로	-	8	1.8	48	72	산책로	산책로7	산책로9	-	-	-
산책로	-	9	3.0	21	96	관음역	남쪽경계	다목적운동장	-	-	-
산책로	-	10	1.8	88	155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9	-	-	-
산책로	-	11	1.5	13	20	산책로	산책로6	다목적운동장	-	-	-



의견서

일시	2023. . .
성명	
주소	※ 회신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연락처	※ 회신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입안(안)
의견사항	
※ 의견사항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102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5.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폐지이유

- 「인천광역시서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제정, 2008. 6. 22. 시행) 이전에 제정된 규칙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게 되었음.
-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위임하는 입법형식은 조례이므로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구조가 되어 바람직하지 않음.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서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폐지

3. 의견제출

○ 이 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도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487, 팩스 032-560-276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서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서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제정, 2008. 6. 22. 시행) 이전에 제정된 규칙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게 되었음.
-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위임하는 입법형식은 조례이므로 조례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구조가 되어 바람직하지 않음.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서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되었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 7. 생략

③ ~ ⑥ 생략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들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도로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2)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금액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금액		
다.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1호	50		
마.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4호	200		
바.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5호	200		
사.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2호	50		
아.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6호	200		
자.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1항제1호			
1)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		50	70	100

<p>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2)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3)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4)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6)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7)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p>		<table border="1"> <tr> <td></td> <td></td> <td></td> </tr> <tr> <td>80</td> <td>120</td> <td>160</td> </tr> <tr> <td>150</td> <td>220</td> <td>300</td> </tr> <tr> <td colspan="3">30</td> </tr> <tr> <td colspan="3">50</td> </tr> <tr> <td colspan="3">100</td> </tr> <tr> <td colspan="3">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td> </tr> </table>				80	120	160	150	220	300	30			50			100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80	120	160																					
150	220	300																					
30																							
50																							
100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p>차.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로 한정한다)</p>	<p>법 제117조 제1항제2호</p>	<p>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p>																					

카.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1항제3호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타. 법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7호	200
파.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3호	50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3-103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3. 5.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안전관리시설의 정의(안 제2조제2호)
- 나.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기준(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생태하천과장)에게 2023. 5. 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3053,
FAX 032-560-272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안전관리시설의 정의(안 제2조제2호)
- 나.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기준(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도 첨부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관리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장치 및 시설을 말한다.

가. 비상벨(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계장치)

나. 안심스크린(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의 빈 공간을 막는 시설)

다. 안심거울(반사경, 미러시트를 설치해 뒷사람의 얼굴 및 행동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심리를 위축시키도록 한 시설)

라. 그 외 CCTV 등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및 기계장치

제4조 중 “이용자에게 편의를”을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을”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설치기준)”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안전관리시설의 설치기준)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정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 (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은 구청장 및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설립주체가 구청장인 지방공사 또는 공단, 직영기업)이 설치한 화장실로 한다. 다만,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인 경우 안전관리시설 중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시설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u>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생 략)</p> <p>2. <u>“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u>“안전관리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장치 및 시설을 말한다.</u></p> <p>가. <u>비상벨(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계장치)</u></p> <p>나. <u>안심스크린(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의 빈 공간을 막는 시설)</u></p> <p>다. <u>안심거울(반사경, 미러시트를 설치해 뒷사람의 얼굴 및 행동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u></p>

여 범죄심리를 위축시키도록
한 시설)

라. 그 외 CCTV 등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및 기
계장치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
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
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
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
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
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
한 것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
는 자는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으로 두되 대변
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
하여 막아야 한다. 단, 조례 개정
이전 설치된 공중화장실 및 개방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

----- 이용자
의 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을 ---

-----.

제2장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

-----.
- <단서 삭제>

화장실에 1년 이내 "안심스크린" 설치를 위한 시설 개선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안전관리시설의 설치기준)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정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은 구청장 및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설립주체가 구청장인 지방공사 또는 공단, 직영기업)이 설치한 화장실로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인 경우 안전관리시설 중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시설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취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7.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